강도·폭행·업무방해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

[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7. 22. 2021고합20, 26(병합), 2021전고8(병합), 2021보고9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,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】 피고인,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【검 사】장근보, 강민욱(기소), 홍유정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지하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고,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.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